

- 물리적환경 - 엘리베이터.화장실등 편의시설
 - 예) 휠체어 사용에 있어서의 사무실 구조문제
- 보조도구 - 약시 : 컴퓨터 확대경. 시각장애 : 음성 변환기
 - 예) 오른손 절단장애의 경우 원손용 컴퓨터 자판
- 출,퇴근 문제 - 활동보조인이나 경비 보전 중요
 - 장애여성의 경우 더 힘든 것 사실(여성이 남성보다 근력이 약한)이나 나약한 존재로 비춰
지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고려되어져야 할 것
 - 출퇴근 시나 동료간의 성추행 문제 :
 - 예) 시각장애여성의 택시사용시 불안. 부축을 이유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 업하면서 추행.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남성(휠체어 밀고 아무 곳이든 간다)

○ 사회적 인식

- 예) - 일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지 못함("어딜 나가 집에나 있지" "또 나가?").
 - 의욕저하
 - 같은 업무수행시에도 편견 작용 ("너도 했네?")
 - 동료들의 몫이해: 행동환경이 달라서 정보공유 힘듦
 - 기회(재교육.출장등)의 제한. 배제 : 얼마나 다닐지... 회사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없음.
 - 결과적으로 능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책임.

3) 제도 및 정책에서의 차별

정보 제공해야 된다는 마인드 없음 : 사각지대

4) 서비스 차원에서의 차별

직업훈련에서의 차별

- 예) - 남자는 미디어. 첨단사업 관련 훈련에 배치되고 여성이 원해도 패션 쪽으로 강요
 - 고용촉진공단의 취업연결 부적절, 사후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장애여성의 탁아서비스가 고용유지에 중요함.
 - 고용장려금외에 장애여성의 고용관련 부분 없음
 - 유형에 따라 추가장치. 비용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함.

5) 차별사례

- 취업장애여성 구인 문구상 차별

: 편의시설미비로 휠체어 장애인 배제되고 뇌병변장애인 전화받는 업무할 수 없음. 커피.심부름 수행
어려움. 행동 느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

- 웹 마스터 배웠으나 단순업무에 고용 연계됨
- 비정규직에 분포 많음
- 대인관계 어려움
- 직업교육시 선생님이 우는 장애여성학생에게 "장애인인 이래서는 안 된다. - 약해서 안 된다." 공무원 기능직 10급: 오래 전 사역(청소등 업무)으로 채용하여 거의 워드업무 시킴.
- 의존적 장애여성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
- 여성계에서도 장애여성문제 정확히 인식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 할당요구가 오히려 제한이 되지 않느냐? 수준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오해
- 할당 - 이기적 태도로 매도
- 다음주 법안인지 후 논의하자/ 고용관련해서 성인지적 관점 거의 없음.

7) 노동 차별 규정화하기

<승진, 배치, 임금 등 관련>

- 여성장애인임을 이유로 주업무보다는 보조적 업무를 기준으로 능력을 판단하여 업무능력 개발의 기회제공없이 고용·승진·배치에 있어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사례 : 무작위 압력을 가하여 심리적 위축을 가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

- 객관적 능력판단과 평등한 승진기회 제공 없이 획일적 단순업무에 배치하여 장애유형 및 성의 고려 없이 역할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다.

○ 장애를 이유로 같은 업무팀원들과 분리하는 것은 차별이다.

사례 : 17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가 4층으로 이동하면서 여성장애인을 힘들거라는 이유로 1층에 혼자 남겨놓음

- 장애를 이유로 동일 업무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고려사항 : 동일 업무이지 동일 노동이 아님. 신체상 환경상의 조건으로 보다 잦은 휴식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무 성격에 따른 판단이 요구됨

- 장애의 신체 조건과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와 임금책정은 차별이다.

< 물리적 환경 관련 >

- 물리적 노동환경의 미비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사례: 일의 성격상 업무가 가능하여 일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거부하는 경우

- 고용과정에서 물리적 노동환경 미비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서면 각서나 구두 약속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차별이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출·퇴근에 있어 요구되는 추가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고려사항 : 국가와 기업의 책임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 있음 → 취업장소에의 접근권과 관련되어 있음. 연계적 논의 필요.

- 기업 내에서 성인식·장애인식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사례 : 비하발언 예방, 동료애, 합리적 고려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성별을 이유로 직업훈련과정에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고려사항 : 여기에는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가 전제되고 이에 따라 선택된 것(informed consent)이어야 함(2003 UN 장애인특별보고관의 의견서에도 제시된 내용)

<출산 휴직>

- * 여성장애인의 출산 휴직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휴직기간 산정은 차별이다.

<탁아서비스>

- * 여성장애인의 탁아 서비스에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별이다.
→ 남녀고용평등법 참조

- * 사내 탁아서비스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조 도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사례 : 수유 시에 장애특성상 침대 혹은 별도의 요구되는 도구 및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 비정규직 관련 >

- * 장애를 이유로 비정규직만을 제안,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다.

▣ 전체 고려 사항

- * 모든 통계 및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인과 성별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함
- * 비정규직 중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함
- * 작업환경내 복리후생의 후진성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IV. 나오는 말

- “여성장애인의 속도를 인정하라”

당초 이번 발제는 당사자로서 남다른 차별 감수성을 갖고 교육권투쟁을 비롯해서 장애인 운동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 활동가가 본인의 생생한 경험과 대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었 다. 그러나 갑자기 고열 등으로 인해 발제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필자가 대신 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시간상의 제약이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필자의 지적 한계로 인해 제한점이 크다.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여성장애인의 몸의 조건 등으로 인해 갑자기 돌발사태? 가 발생할때가 종종 있다. 이번일만 해도 휠체어를 계속 타야하는 그녀의 몸의 조건이 병을 더 크게 부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토론회 날 꼭, 꼭 오겠다고 손까지 걸었던 장애인들이 비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본다.

차가 없는 뇌병변 여성장애인 C씨의 경우 비오는 날 우산은 어느 손에 받쳐야 할까? 아예 바깥출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눈 쌓인 날, 스쿠터 타고 출근하는 M씨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눈 오는 밤, 차를 주차하고 목발 짚으며 언덕길을 오르다 구르고 또 굴러 몇 시간을 추위와 외로움에 떨었다는 K선배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습기찬 날이면 온 몸이 쑤셔돼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하는 여성장애인 L씨의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까? 활동가로서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으로 류마티스가 심해져 병원을 다시 출입하고 있는 O씨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 S와 K 씨,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 차가 부서져 복구현장에도 못나가고 있고, 몸의 조건으로 인해 그 만큼 재해 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피해보상은 누가 해줄 수 있는가?

비장애인 중심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속도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교육, 노동 현장 속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설자리는 그만 큼 좁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속도인가? 누구를 위한 효율인가?

국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여,

제발, 여성장애인의 속도를 인정하라!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느낌을 탓하기 전에 사회구조적 환경과 사회인식부터 개선하라!

< 참고문헌 >

김은실 외, 2002,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김은정, 1999, “장애인 여성의 몸의 정치학 - 직업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 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이대 대학원 여성학과.

오헤경 외,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2003. 제 1차 공청회 자료집.

-----, 2003. 장애인차별 되돌아보기 세 번째 토론회 자료집.

장추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 2003, 교육, 노동관련 세미나 자료.

조순경 외, 2000, 「노동과 폐미니즘」, 이대출판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교육과정 · 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김미송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운영위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위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과 취업비율은 장애남성이나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실정이다. 뇌성마비 장애여성인 필자 역시 교육과정과 취업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서는 교육과정과 취업과정에서의 여성장애인 차별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필자의 경험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초등학교 때까지 나는 엄마한테 업혀서 등하교를 했다. 학교에서는 짹꿍이 활동보조인 비슷하게 날 많이 도와주었다. 예를 들어 시험시간에는 나의 짹꿍이 30분만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선생님의 허락 하에 내가 불러주는 답을 답안지에 적어주었다.

내가 일반학교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친구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 역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엄마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어딜 가냐?”고 반대를 하셨다. 더군다나 엄마는 내가 한글만 깨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길 원하셨다. 하지만 엄마와의 실갱이를 벌인 후 결국 나는 집을 떠나 특수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나의 고생은 줄지 않았다.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어떤 학교의 기숙사에는 보모가 있다던데, 내가 다닌 학교는 보모가 없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인 서로로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행동이 느린 중증 장애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옷을 입고, 씻고, 아침식사 시간에 맞추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과정들이 모두 힘겨웠다.

또 특수학교에서 선생님이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발표할 기회를 안주는 등 뇌성마비 장애인을 차별했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덩달아 뇌성마비 장애인을 차별했다. 전체적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을 소아마비 장애인이나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부족한 존재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화장실로 인한 문제는 초, 중, 고등학교 때 모두 공통적으로 겪었다. 무엇보다도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이 내게는 항상 부족했다. 특히 나를 비롯해서 중증 장애여성은 생리를 하게 될 경우 화장실에 들어가서 생리 처리를 하는 데만 보통 2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그에 비해 주워진 시간은 터부니 없이 적었다.

2. 취업과정에서의 차별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재활원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그 당시(93년도) 직업전문학교측에서는 내 장애정도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 직업전문학교에는 양재나 전자조립, 목공, 컴퓨터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당시는 컴퓨터 보급이 많이 않은 상황이어서 컴퓨터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은 '고급'교육, 즉 경증장애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번은 '무궁화전자'라는 전자회사가 기숙사도 있고,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취업 문의를 해 본 적이 있다. 전화로 나의 장애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무궁화전자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 장애상태에 남성이면 박스라도 들고 힘쓰는 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여성인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일이 없다고 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었지만, 내게 일 할 기회는 주워지지 않았다.

3.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두 명의 여성장애인 친구가 노동시장에서 겪은 경험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 친구 A는 어느 직업전문학교에서 정보처리과정을 2년 동안 배우고 또 다른 직업전문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운 뒤 복지관에서 하는 웹디자인을 2년 정도 배웠다. 그 이후 2~3년 동안 취업을 못하다가 결국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한지 1년 만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지금은 실직상태에 있다.

또 다른 여성장애인 친구 B는 직업훈련원에서 4~5년 컴퓨터를 배우고 공단 소개로 어느 사무실에 컴퓨터 편집업무로 취업을 했다. 그런데 사무실서 컴퓨터 편집일을 5~6개월 하다가 아래층의 생산직종으로 발령 받아서 내려갔다. 3년 정도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뒀다. 지금은 실직상태에 있다. B는 컴퓨터 편집업무에서 생산직으로 옮겨가 생산직 아줌마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게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사무실에서 눈치보이는 것보다 생산직에서 일 하는게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고 했다. B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생산직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회사측이 B를 사무업무에서 생산직 업무로 발령 낸 것은 회사측이 B를 그만두게 하려고 한 의도에 의한 것 같고 B도 이런 의도를 알지만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버틴 것 같다.

이 두 친구 모두 직업전문학교와 복지관과 같은 장애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랜 기간 전문기술을 익히며 취업 준비를 했지만, 취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을 하더라고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실직자가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열악한 취업환경은 B의 경우처럼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문화권 & 접근권에서 장애여성을 말하다

최해선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장추련 법제정 위원회 여성팀

* 들어가며

차별은 사회 속에서 공공연하게, 그러나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만연해 있는 금기이지요. 사회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금기는 밝은 곳으로 끌어와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은 결코 시정되거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차별>에 있어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차별을 받는 한편 차별을 하는 존재이니까요. 장애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장애인이 단지 장애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것처럼 장애인 중에서도 단지 여성(장애인)이라서, 혹은 어린(장애인)이라서, 혹은 못 배운(장애인)이라서, 혹은 못 생긴(장애인)이라서 차별의 정점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차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메스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편견은 은밀하고도 뿌리깊습니다. 몇 년 전에 척수장애인인 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장애여성과 비장애인 남성과의 결혼은 화제가 되어 매스컴에서 몇 번이나 다루어졌습니다. 인터뷰와 재연드라마가 각 방송사마다 이루어졌지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만남에서부터 연애, 결혼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던 저로서는 재연드라마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의 남편 된 사람을 만나 오랫동안 혼자 좋아하며 속앓이를 하다가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등 멋지고 과감한 도전을 하기를 2~3년동안 하다가 마침내 그 남자가 친구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에 이르렀던 것인데 재연드라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한편의 엉뚱한 ‘드라마’였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다소곳하고 소극적인 친구에게 비장애인 남성이 몇 번이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친구가 거절하다가 결국 그 남성의 프로포즈를 어렵게 받아들여 결혼을 결심, 아름답고 특별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편견에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소극적이고 조용한 장애 여성, 사랑과 결혼을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는 서양의 고전 소설 속 여주인공과 같은 인형,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여리고 하얀 클라라의 이미지,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 등등. 방송의 상상력은 이토록 빈약하고 허무맹랑합니다. 방송의 영상물은 상상과 사실(진실)이 언제 쓰여지고 필요한지, 그 두 가지의 적절한 쓰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송에서의 왜곡된 표현은 대중에게 그 대상을 보는 시선을 왜곡시키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 영화에서 나타나는 장애여성

다수의 대중이 가장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장치로 영화라는 매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 / 국외의 영화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영화가 여러 편 있지만 그 중에 장애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장애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최근에 개봉되어 화제가 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를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과거 '백치 아다다' 같은 작품은 문학 작품을 영상화한 것으로써 제외시켰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여러 편의 영화가 있었지만 만족 할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차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남성의 경우 영화 속에서의 이미지는 능동적이고 사회적이며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인 반면 장애여성이 등장하는 영화는 수동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아시스를 위시해서 우리나라의 영상물에 등장하는 장애여성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고 보고 싶은 대상으로서의 장애여성'이 있을 뿐 '정신'과 '마음'이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아시스 (2002, 한국, Oasis)

뇌성마비 장애인 한공주에게 어느 날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홍종두라는 남자가 찾아온다. 다짜고짜 공주를 강간하려다가 쇼크로 발작을 일으킨 공주에게 놀라 도망쳤던 홍종두에게 외로움에 지친 한공주는 전화를 한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공주와 종두는 장애인이고 전파자이지만 아무도 정을 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나눈다. 그러다가 공주의 오빠 부부에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발각되어 종두는 강간미수범으로 경찰서로 끌려가고 공주는 그런 종두를 기다린다.

'오아시스'나 '집으로' 등에 나타난 장애여성상은 틀에 맞춰지고 비장애인의 고정관념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보는 관객에게는 성실하기 이를 데 없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순수하며 순진하지요. 시시껄렁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장애인에게 그 비할 데 없는 인내심과 한결같은 애정, 끝없는 포용력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장애가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인공이어도 주변인에 가깝지요.

만약에 감독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순수한 주변인의 사랑'을 그리고 싶은데 그 소재로 '장애여성'을 선택했을 뿐인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그리고 싶은데 그 소재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순수한 주변인의 사랑'을 선택한 것인지 한번쯤은 상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아시스는 비평가와 관객으로부터 격찬을 받고 많은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몇 백만 명이 관람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극장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관객 중에 누구 하나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사랑하는 홍종두를, 그리고 '강간미수라는 폭력으로 들이닥치는 홍종두'를 사랑하는 한공주를. 그러면서

도 그 순수함과 사랑을 찬양할 뿐이지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반응은 무엇 때문일까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소수의 사람들’과 ‘사회를 냉혹하고 비정하게 만드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넘칠 정도로 고민하고 관찰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즉 ‘장애인’과 ‘여성’에 대해서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영화의 주제에 대한 무성의를 따지기 이전에 장애여성에 대한 무지에서 안겨 주는 모욕이었습니다. 뛰어난 뇌성마비 장애인 연기를 보여준 여배우는 찬사를 받을 만 하지만 몸짓이 연기의 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기가 영화의 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여자의 소리(음성적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어디에서 들려왔으며 정신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지. 잘 들리지 않았던 장애여성의 소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장애여성의 정신이 영화 ‘오아시스’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니와 준 (1993, 미국, Benny & Joon)

유일한 혈육인 오빠 베니와 함께 사는 준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정서장애가 있는 여성이다. 베니는 준을 돌보느라 항상 직장과 집에 매여 지내기만 한다. 구하는 가정부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준의 히스테리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 사람이 필요하던 차에 샘이 베니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샘은 스무 살이 넘은 나이에도 글을 모르는 아이 같은 청년이었다.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샘과 준이 서로 이해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폐쇄적이던 준이 활발해지고 소극적이던 샘도 적극적이 되어간다. 그런 준과 샘이 사랑에 빠지자 베니는 몹시 화를 내며 둘을 갈라놓으려 한다. 준은 오빠의 반대에 반발해 샘과 도망가려다 붙잡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동생을 보다못한 베니는 샘과의 만남(사랑)을 허락한다. 덕분에 동생을 보호하느라 자기 생활이 없던 베니는 드디어 자기만의 생활이라는 것도 갖게 되고 애인도 생겨 네 사람은 평화롭게 살아간다. 자극히 평범한 베니와 애인, 그리고 둘만의 세상 속에서 단 둘만의 사랑으로 행복한 준과 샘. 얼핏 보면 이상하고 특이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멋지고 자유로운 사랑이다.

준은 남들에게는 이상하고 항상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여성이지만 사실 그 자신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그것은 누구 못지 않게 편안하고 완성된 세계입니다. 그러한 준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샘만은 이해하고 알아줍니다. 준의 외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세상의 눈높이를 준에게 맞추는 일에도 능숙하고 즐겁게 펼쳐 보입니다. 샘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샘 자신도 쉽게 이해 받지 못하는, 하지만 결코 비정상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준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오빠 베니조차도 할 수 없었던,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해를 서로 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이상하다거나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 속에도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고 이해와 완성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단순화돼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말이지요. 평등한 만남과 사랑은 장애와 비장애인과 결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준과 샘은 보여줍니다.

작은 신의 아이들 (1986, 미국, Children of a Lesser God)

시골 항구 도시의 농아학교 선생으로 부임해온 제임스 리는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며 학교측과 학생들의 신뢰를 동시에 얻는다. 그런데 중 제임스는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자폐적인 성향의 청각장애 여성 사라를 만난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라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제임스. 수영장에서 침묵의 교감을 느낀 제임스와 사라는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게 된다. 하지만 제임스는 사라에게 말을 가르치려 하고 이에 반발한 사라는 집을 나가버린다. 사라가 떠난 후에야 진정한 언어의 의미를 깨닫게 된 제임스는 학생들을 위한 파티가 있던 밤에 사라를 만나 소리를 뛰어넘는 언어로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한다.

연극 무대에서 몇 번의 작은 배역을 맡은 것이 고작인 실제 청각장애인 매틀린의 연기는 침묵과 대비되는 상념, 욕망, 허영들을 잊게 만든다는 평을 들었다. 윌리엄 헤트는 <거미 여인의 키스>로 이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바 있으며 말리 매틀린은 골든 글로브상을 받았다. 1980년에 메도프 극장에서 공연되어 토니상을 받은 연극을 메도프가 직접 각색하였다. 극중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 흐를 때 그 음악을 몸짓으로 설명해 주려는 윌리엄 헤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라는 청각장애인으로 자아와 독립심이 강한 여성입니다. 비록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자폐적인 성향이 있지만 사랑을 함에 있어서 당당한 여성인지도 하지요. 그런 사라를 사랑하게 된 제임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라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라를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 좀 더 사회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무언가 소리화 된 언어, 제임스 자신의 언어로 사라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진정한 언어는 제임스가 가르치려고 하기 전부터 사라도 잘 알고 있었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만의 언어를 말하고 말하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언어를 듣고 말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 제임스도 사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제임스의 통역도 필요하지 않고 보호도 필요하지 않는 사라는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서 당당한 독립체로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 만큼 과거의 상처를 씻는 일도 사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장애여성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한국, MBC, 1999)는 어려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된 여성의 이야기다. 주인공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대학교에 들어가지만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들과 남학생의 성추행으로 상처를 입고 자퇴를 한다.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가서 재미교포 청년 벤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지만 벤의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헤어지고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과로사한다. 벤에게는 근육디스트로피라는 병으로 투병중인 형이 있었다. 벤의 어머니와 형은 집안에 장애인이 하나만으로도 고통스

러운 일이라며 두 사람의 결혼에 반대한다. 하지만 형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어머니를 설득한다. "내 어머니마저 나 같은 사람을 거부하면 나는 다시는 희망 같은 거 못 가질 것 같아서, 그게 겁이 나요…"

결국 온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남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주인공은 국제 변호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 드라마가 방송된 뒤에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재방영 요청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시청 소감이 쏟아졌습니다.

이 드라마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대개가 장애인이 도저히 필설로도 옮기기 어려운 산전수전을 겪는다거나, 그런 어려움과 고생 끝에 성공 신화를 이룩한다는 소제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장애인에게 성공 신화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은 무조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고 있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평범함, 일상의 소중함은 장애여성에게 있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장애여성은 평범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장애가 특별하다거나 이상하다거나 평범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여성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얼마든지 드라마의 소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정서가 다른 점이 많아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부분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는 어디에서나 통한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재에 머무는 만큼 열핏 보면 사회적인 메시지는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개개인이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므로 어느 개인의 삶이 전체의 삶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 장애인이 주연 또는 조연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일본은 영상물이 영화보다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대히트를 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일본 영화가 대히트를 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영화보다 드라마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니시리즈<뷰티풀 라이프(일본, TBS)>, 특집극<너의 손이 속삭이고 있어(일본, 아사히TV), 섬머 스노우(일본, TBS), 립스틱(일본, 후지TV), 신이시여 조금만 더(일본, 후지TV), 사랑한다고 말해 줘(일본, TBS), 별의 금화(일본, 일본TV) 등이 있습니다.

'뷰티풀 라이프 Beautiful Life'는 2000년 TBS에서 방송한 그 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11부작 미니시리즈로 27세의 하반신마비 장애인 여성인 도서관 사서로 나온다. 젊은 남성을 만나 사랑을 하며 느끼는 기쁨과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가족간, 친구간 등 인간관계에 대한 설정도 매우 사실적이다. 하는 드라마다 대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유명한 각본가 키타가와 에리코의 작품으로 작가는 훨체어를 타는 하반신마비 장애여성의 일상과 사랑을 그리기 위하여 1년여가 넘도록 하반신마비 장애여성과 깊은 교류를 했으며 실생활을 보여주는 부분이나 주인공의 공감대에서 마음대로 꾸며낸 것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너의 손이 속삭이고 있어 君の手がささやいている'는 아사히TV에서 1997년 1회가 만 들어진 이후로 1년에 한편씩 만들어져서 2002년 겨울 5회로 막을 내렸다. 선천적인 청각장애인 여성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시작하는 드라마는, 이 여성의 사회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모님의 반대에도 어렵게 결혼을 하여(1회) 아이를 낳고 기르는(2회) 가정생활을 하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려 깊고 따뜻한 성품의 주인공 미에코는 남편과 부모님, 딸 등 가족이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할 존재가 아니다. 딸에게는 솔씨 좋고 멋진 엄마로서, 남편에게는 대화가 통하고 이해심 깊은 아내로서, 양가 부모님에게는 사랑스러운 딸과 믿음직한 며느리로서, 친구에게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로서, 그리고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직업여성으로서 살아간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주인공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들은 나레이션보다 대부분 수화로 대화를 하며 주인공과 관계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가 있건 없건 수화에 능숙하다. 수화는 통역하지 않고 자막도 없으며 대신에 연기자들이 하는 말과 여러 지문, 주위 상황 등을 자막 처리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드라마로서도 손색이 없다. 가끔은 수화를 읽을 수 없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 청각장애인의 일반 드라마를 보면 느끼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경험을 주기도 한다.

'섬머 스노우 Summer Snow'는 2000년 TBS에서 방영한 미니시리즈로 여자주인공은 심장병을 가지고 있고 남자주인공의 남동생은 청각장애가 있는 고교생으로 등장한다. 남자주인공은 청각장애가 있는 동생의 침묵의 세계를 이해하고 같이 하고 나누고 싶어 동생과 취미로 스키스쿠버를 하는데 바닷속의 고요함은 장애가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여주인공도 심장병의 위험을 무릎 쓰고 스키스쿠버를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수영을 배우고 스키스쿠버에 도전하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신이시여 조금만 더 神様 ,もう少しだけ'는 1998년 방영작으로 단 한번의 원조교제로 에이즈에 걸린 여고생의 이야기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시선을 모았다.

연기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인기가 있는 연기자가 연기를 하기 때문에 어설프거나 어색하지 않지요. 최고의 각본가와 최고의 연출가, 그리고 최고의 배우가 함께 만들고 시청자가 가장 많이 TV를 시청한다는 황금시간대에 단막극이나 특집드라마가 아닌 미니시리즈나 연속극의 주인공 또는 비중 있는 조연으로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깜짝 편성되어 방송되는 드라마나 다큐물들이 초보 작가와 초보 연출가, 그리고 무명의 배우이거나 혹은 주목받지 못하는 연기자가 출연하는, 그리고 어둡고 우울하거나 교훈적이기만 한 드라마는 누구의 관심도 끌 수 없으며 왜곡된 이미지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물론 위의 드라마들은 모두 대성공을 거둔 드라마이고 일본의 장애인이 나오는 드라마를 모두 보지 않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주/조연급으로 나오는 장애인들을 보면 장애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드라마 소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이나 에이즈 환자이거나 과장되지 않지만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는 충분히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의 모 드라마에 청각장애인여성이 나왔을 때 정작 배우는 몇 마디만을 수화로 말할 뿐 대사를 모두 나레이션으로 처리하고 그 청각장애인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전혀 수화를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청각장애인이라는 인상을 지워버리고 이야기 구조에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묻어 버린 적이 있었지요. 오직 대사만이 있고 섬세한 몸의 표현이 없는 연기가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배역에 대한 최선의 노력과 성의가 보이지 않는 연기에 시청자는 결코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역할은 그 같은 장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작은 동작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과 현실에 바탕을 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억지스러운 설정과 고정된 관념은 시청자들에게 상상력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는 허구이므로 상상력의 산물이고 창작의 결과물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근거 없는 상상력이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영상물로 제작되는 것은 위험하고 허무하며 또 다른 협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 언론과 방송의 왜곡

언론과 방송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보여지고 다루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재삼 강조하지만 올바른 장애인상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비장애인인 아닌 한 대부분은 장애인에 대해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설혹 안다고 해도 그것은 대개는 단순하게 아는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냥 방송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장애인의 진정한 모습이자 삶이라고 생각해 버리죠. 그런 만큼 대단히 위험하며 쉽게 왜곡되어 질 소지가 분명하므로 방송과 언론은 매우 신중하고 진실성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언젠가 모 월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취재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쓰게 된 동기라던가 장애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찍고 돌아갔는데 다음에 월간지가 나왔을 때 기사 내용을 보고 나와 가족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온 몸이 뒤틀리고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사실과는 다른 묘사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나절 동안이나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도 이렇게 왜곡을 하다니...하고 말입니다. 또 한번은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일이 있었는데 연출자와 카메라 감독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만 찍겠다는 처음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주세요. 가능한 한 쓸쓸한 모습으로...” 등 평소의 내가 취하지 않는 장면 연출을 요구하며 거절해도 내 거절의사 표시를 묵살하고 계속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연출된 장면을 찍혔지만 기분은 매우 불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한 말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이나 방송이 연출을 하면 대개는 그것을 사실이고 실제라고 믿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찌 언론과 방송에서 만들고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방송법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은 장애인에 관한 방송법이 있지만 조항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합니다. 제6조 5항에서처럼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은 있으나 어떻게 어떻게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송법에서 제정한 법령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실행되지 않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염두에 둘 사항으로써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33조 제2항 일곱 번 째 각호를 보면 (장애인 등 방송 소외 계층의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이 문항 또한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방송법은 방송이 국민의 정서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있으므로 그 실행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 6조 3항을 보면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바, 방송에서 반드시 장애여성의 탁월함이 나타나도록 강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방송에서 장애여성의 모습이 긍정적이며 탁월함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실행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여성의 이미지를 근거 없이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재를 가해야 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모든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필요와 사회적인 잠재력을 사회가 인식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조약 안에서 인지해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에서 동시에 다루어져야 합니다.

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권리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의성)

-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 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심의규정)

- ①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하다.
 -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 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시행령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돋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7>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문화와 접근권

지난 4월 어느 날 보고 싶은 공연이 있어서 인터넷 티켓 예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예매는 안 되니 전화로 예매해 주세요. 하는 안내에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공연들이 장애인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단 초청 공연이라 장애인 할인이 된다해도 가격이 상당하여 가장 낮은 A석을 예매하려는데 A석은 장애인이 살 수 없으니 R석이나 VIP석 중에 한 쪽을 예매하라고 안내 해 주더군요.

왜 예매할 수 없느냐고 예매 담당자에게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 담당자를 바꿔 주겠다고 하며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전화를 바꿔 받은 담당자는 A석은 3층인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다. 50% 할인을 해 주고 있으니 그 할인을 받고 2층의 R석이나 VIP석을 예매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나요? R석이나 VIP석은 너무 비싸서 A석을 예매하고 싶은데요.

저희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특히 휠체어 장애인은 3층 좌석을 예매할 수 없습니다.

LG아트센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어째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거기에서 왜 "어째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장애인에게 50% 할인을 해 주고 있고 그 정도면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공연에서 장애인이 50%나 할인을 해 주나요? 우리로서는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한 겁니다.

요즘은 대개 장애인은 50% 할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3층에서 비장애인은 볼 수 있고 장애인은 볼 수 없다면 그건 차별 아닌가요?

"차별"요? 그게 무슨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할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3층의 티켓을 예매하시는 '일반인'들은 20~30%의 할인밖에 못 받으시는데요. 장애인은 50%나 할인이 되니까 R석이나 VIP석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R석을 예매했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R석을 예매하고 관람은 2층의 맨 뒤 통로에서 공연 관람을 하라고 하기에 허리가 아파서 휠체어에서 예매된 좌석 의자로 옮겨 앉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놀라서 물더군요.

휠체어에 오래 타고 있으면 허리가 아픈가요?

예

그럼...동행인이 옮겨 주실 수 있으시죠?

저도 동행인도 다 여자라 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우리 안내 도우미도 다 여자라 곤란한데요.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그 담당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공연 한참 전에 오셔야 해요. 다른 손님들 오시기 전에 오세요. 다른 손님들 오시면 혼잡하고 방해가 되고 저희 도우미들도 바쁘니까요.

당일에 LG아트센터에 가서 공연을 보기 전에 장애인 화장실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내인에게 가서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고 말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며 가 보더군요. 그리고는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장애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문을 잠궈 놓았습니다. 지금 열었으니 가보라고 말입니다.

* 접근의 장벽

이처럼 공연장에서 좌석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 받고 공연 주최측 안내 담당자의 불쾌한 응대와 시설미비로 인한 장애인 차별은 비일비재합니다. 「외국의 경우 VIP석이나 로열석에 장애인좌석을 마련하더라도 입장료는 A석 요금이나 B석 요금을 받습니다. 공연장 시설에 장애인용 좌석이 없다면 공연이 제일 잘 보이고 통행이 가능하며, 동행인과 나란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에 장애인 좌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좌석은 휠체어석과 일반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은 배용호 편의연대 실장님의 조언을 발췌했음』)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별에서부터 미비한 시설물, 문화권, 접근권 차별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퍼져 있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기쁨인 문화생활에의 접근이 관람에서부터 참여까지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생활의 소비와 생산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도외시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생활의 소비자가 되기 위한 경제적인 활동, 즉 고용에의 제약이 심하고 방송과 언론 등 미디어에서 다루는 장애

인의 모습은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나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 일색이어서 보통 사람들처럼 문화생활을 즐기고 나아가 문화의 한 영역에서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먼 나라의 일처럼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문화생활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난 뒤 인간의 욕구는 여가생활에 좀 더 풍요롭고 고급화 된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 접근의 벽을 없애고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램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에의 장벽은 왜곡된 인식과 같은 정신적인 장벽이 있고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물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문화적인 접근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 및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차별을 의미합니다.

1) 인식과 태도의 장벽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즉 잘못된 인식이다. 장애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낯설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가로막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장애인은 혼잡한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오지 않는 것이 좋다와 같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편견이 있는가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무슨 축구나 영화를 보러 오겠느냐와 같이 특별한 장애 영역에 대한 편견도 있다.

장애인의 거리를 나서면 신기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리의 시선들도 장애인의 문화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장애인을 대하기 어려워하며 부담스러워 하는 태도 역시 장애인의 문화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대표적인 편견과 오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¹⁹⁾

첫째, 장애인은 무능력하다.

둘째, 장애인은 자신들을 위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무엇을 먹겠느냐고 물을 때도 장애인 본인에게 묻지 않고 동행한 비장애인에게 묻는다.

셋째,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돌볼 의무가 있다.

넷째, 모든 장애인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다섯째, 모든 청각장애인은 입술모양을 완벽히 읽는 구화(口話)를 할 줄 알며, 그것이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실제로 구화를 전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도 많다.

여섯째,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지 못한다.

일곱째,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묻지 않고 도와주거나 아예 도와주지 않는 일이 더 무례한 일이다.

19) Charles Goldman,『Disability Right Guide-Practical Solutions to Problems Affec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2nd ed., Media Publishing-A Division of Westport Publishers, Inc.) 가운데 제1장 “태도의 장벽(Attitudinal Barriers)”. 배용호, “장애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9), pp. 181-190에서 재인용.

여덟째, 모든 학습장애인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홉째, 정신지체 장애인은 감염성이 있으며 이웃에 위협하다.

열 번째,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휠체어에 앉아야만 하며, 모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의 영역과 장애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르다.

열한 번째, 장애인은 아프며 행복하지 않다.

열두 번째, 뒷문에 있는 경사로도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해준다. 접근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주 출입구(정문)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동등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세 번째, 개개의 장애인들은 모두 비슷하다. 장애인도 개인이다. 개인 모두가 성격과 외모와 취미가 다르듯이 장애인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격과 외모와 취미가 다른다.

2) 물리적 장벽

장애인의 문화접근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은 바로 물리적인 장벽이다. 물리적인 장벽이란 사회 전반의 시설들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의 이용을 가로막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첫째, 집에서부터 집밖으로 나오는 외출이 가능해야 하며, 둘째,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가능해야하고 셋째, 목적지에 도착해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넷째, 접근한 후에는 자유롭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문화생활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

(1)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1999년도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횡단보도의 턱낮추기²⁰⁾가 되어 있는 곳이 36,145개 가운데 32,752개로서 90.6%의 설치율을 나타냈으며, 점자블록²¹⁾의 설치 역시 37,818개 가운데 32,818개로서 86.8%의 설치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도로의 유효폭²²⁾, 도로의 기울기 등은 아직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대다수의 도로가 좁거나, 심하게 기울어져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심하게 유통불통거려 다니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다.²³⁾

이처럼 적절한 유효폭, 기울기, 편편한 노면 등이 보장되지 않아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갑자기 생긴 공사안내판이나, 맨홀뚜껑이 열려 있는 맨홀 등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²⁴⁾ 역시 시각

20)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의 턱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단보도의 턱을 3cm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횡단보도의 턱낮추기라고 한다.

2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기 위한 편의시설 가운데 하나로서 3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형블록과 4개의 줄로 이루어진 선형블록으로 나누어 진다. 이 가운데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앞, 계단 앞 등과 같이 일단 정지를 의미하는 곳, 위험을 의미하는 곳에 설치되며, 선형블록은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길을 따라 가라는 유도를 의미할 때 설치된다.

22) 보행로에서 실제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을 의미한다. 가로등, 가로수, 입간판 등이 나와 있다면,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을 제외한 폭이 유효폭이 된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1.2m의 유효폭이 있어야 한다.

23) 배용호, “편의시설의 정의와 편의증진법의 이해”, 2001 편의시설 시민대학(서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1), p. 21.

24)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기둥이나 봉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집에서부터 나와 목적지까지 보행할 경우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보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이 보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동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수단이다.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지하철뿐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 볼 때, 버스의 경우는 저상버스(低床BUS)²⁵⁾나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시내버스가 단 1대도 없으며, 택시의 경우도 역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택시는 단 1대도 없다. 기존의 버스처럼 계단이 있는 버스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 등도 이용하기 어렵지만,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버스를 이용한 이동이 불가능하며, 버스는 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역시 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버스가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할 길도 없으며, 몇 번 버스가 왔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안내방송을 들을 수 없어 자신이 원하는 정류장에 도착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지하철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역시 이용에 어려움은 많다.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1기 지하철(1호선에서 4호선)의 경우, 2001년 7월 현재 140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개 역,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61개 역,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68개 역,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6개 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2기 지하철(5호선에서 8호선)의 경우, 2001년 7월 현재, 130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56개 역,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72개 역,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0개 역,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26개 역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 270개 역 가운데, 40.37%인 109개 역에는 휠체어리프트나 엘리베이터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결국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지하철마저도 40%의 역에 승강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지하철 역시 아직은 장애인의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택시 역시 이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만 이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비싼 요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없어,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에서 택시로 옮겨 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²⁷⁾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에서 내려서 옮겨 타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가능하다고 해도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의 도입이 절실히다.

이처럼 버스, 지하철, 택시에 남아 있는 이용의 어려움과 불편은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2) 공공시설 및 건축물 이용에 있어서의 장벽

25) Low Floor Bus 또는 Non-step Bus라고도 한다. 계단이 없이 버스의 바닥이 낮은 버스를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버스의 바닥이 40cm이하이고 계단이 전혀 없는 버스를 가리킨다.

26) 자료집, “서울시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서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1), pp. 2-12.

27) 선진국에는 이미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택시가 유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택시의 경우 일반 택시보다 높이가 높고 간이 경사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착석 할 수 있는 좌석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안전띠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택시는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1998년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7년도의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은 41.9%로 나타나 1996년도의 36.8%에 비하여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설치율은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전국 116,997개 대상시설을 조사한 것으로서, 대상시설별로는 공항이 80%로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여주고, 지하도 육교 등이 26.0%로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편의시설 종류 가운데는 턱낮추기가 73.3%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음향신호기가 14.4%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²⁸⁾에 의거하여 전국 153,093개소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편의시설 설치율은 48.2%라고 발표하였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²⁹⁾ 등 모두 16개 항목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시설이 70.4%로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여주었으며, 공원(34.1%), 여관(33.7%) 등이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었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접근로(62.3%)와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54.2%)가 그나마 높은 설치율을 보여준 반면 화장실(17.0%), 시각장애인안내설비(8.0%), 청각장애인안내설비(6.4%) 등이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여주었다.³⁰⁾

이처럼 편의시설 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병원 학교 판매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은 물론 장애인의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의 이용에 있어서의 장벽

편의시설 가운데 편의증진법에 의한 정보통신 부분은 공중전화와 우체통의 정비가 전부이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면에서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설치율이 매우 낮아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에게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필수적인 것처럼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텔레비전 자막방송 역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나 모든 텔레비전에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청각장애인 개인적으로 자막수신기를 구입해야 하며, 그밖에 비디오 등에도 자막(캡션)삽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한국 영화의 경우 자막이 삽입된 비디오테입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아직도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이나 매스컴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³¹⁾ 대부분의 문화예술공간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문자안내판³²⁾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들 역시 대부분의 정보들이 음성이나 점자 등으로 제공되지 않아 정보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영화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기³³⁾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가

28) 정식 법률 명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며, 1997년에 제정되고 199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종류,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설치의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9)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는 턱이나 계단이 없어야 하며, 계단이 있을 경우에는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하고, 턱이 있을 경우에는 3cm이하로 턱을 낮추거나 역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출입구 턱낮추기라고 한다.

30) 배용호, “편의시설의 정의와 편의증진법의 이해”, 2001 편의시설 시민대학(서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1), p. 20.

31) 배용호, “편의시설의 의미와 편의증진법의 이해”, p.22.

32)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이 공연되고 있다면, 이러한 전광판을 설치해서 대사를 문자로 보여주어야 한다.

33) 영화의 장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장치로서 대사가 없는 장면 등을 시각장애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로 막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들은 삶의 질의 중요도 우선 순위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을 가장 중요한 1순위로 보고 있어³⁴⁾ 정보접근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는 높지만 현실의 장벽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용호 / 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연구실장 「장애인과 문화접근」 중에서 5. 장애인의 문화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들에서 발췌

* 장벽 없애기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문화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려면 세 가지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정비와 보장이고 둘째는 인식의 개선, 셋째는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1) 제도적인 정비

먼저 장애인의 문화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동의 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거나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역시 기존의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주는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유료 도우미 제도³⁵⁾의 운영, 장애인을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³⁶⁾의 도입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2) 인식의 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문화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장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버려야 합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낯선 느낌이나 생각들도 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도 국민이며, 시민이고, 소비자이며,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이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될 때, 일반 국민과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도 누릴 수 있게 되며, 장애인이 소비자가 되고 고객이 될 때, 문화시설에서도 장애인 고객을 맞을 준비를 갖출 것이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추고 주 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제거하거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하는 일 등은 인식의 개선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3) 서비스의 제공

34) 박승희,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연구”, p.97.

35) 유료 도우미 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도우미에게 지급할 금여는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36)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와 같이 장애인이 집에서 전화 등으로 신청을 하면 차량이 집까지 와 주고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편도 또는 왕복으로 운행을 하며, 가격은 일반 교통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다.

이처럼 법률을 정비하고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다.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야말로 장애인의 문화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다. 편의시설을 갖출 수 없는 문화시설이나 갖추었다고 해도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다. 친절한 안내와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은 문화생활을 더욱 즐겁게 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식당에 점자 메뉴판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 시각장애인이 오면 종업원이 메뉴를 읽어주거나, 메뉴를 녹음해놓은 오디오 테입을 틀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친절이다. 그러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즉, 장애인이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배용호 /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연구실장 「장애인과 문화접근」 중에서 6. 장애인의 문화 접근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발췌

* 나오며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모습이 다수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어의 전 영역에서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인식, 즉 특별하다기보다 보편적이며 감동적으로 꾸며진 이야기보다 평범하고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생기는 인식 형성,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일깨우는 길은 '시민 감시 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해야 하며 차별금지법안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법령을 만들어 구속력을 실행해야 합니다.

문화권과 접근권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벽을 부수는 일은 아직도 멀고 험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장애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 하나 장벽을 부수고 왜곡된 인식과도 싸워야 하며 낙후된 교통 시설과 편의시설 등, 이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차별금지법 제정의 열의에 불을 지펴줄 연료로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토론 1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주제토론 2

김대성

한국DPI 대외협력이사

장추련 공동상집위원장

		모형 I B	모형 II B	모형 III B	모형 IV B	모형 V B	모형 VI B	모형 VII B	모형 VIII B	
일반적 특성										
연령		0.0052								-0.05
	초졸이하	-								-
학력	중·졸	0.445								1.118
	고·졸	5.020**								2.369
	전문대·대학	3.096								5.056
신체적 특성										
	입원중	-								-
현재상태	통원중	-9.673***								-3.553
	치료종결	-8.367***								-2.772
경제적 특성										
	악화됨	-								-
생계변화	보통	3.629**								0.0603
	좋아짐	7.897*								7.115
심리적 특성										
	없음	-								-
자살	있음	-0.525								-4.955
	충동	-2.629*								-6.466
사회적 관계										
	악화	-								-
가족이해	보통	-5.942**								-4.955*
	양호	-4.052*								-6.466
	악화	-								-
부부관계변화	보통	-1.797								-0.964
	양호	1.337								2.955
	악화	-								-
자녀관계변화	보통	3.568*								0.286
	양호	6.051*								2.582
	악화	-								-
친구관계변화	보통	1.528								0.161
	양호	2.887								0.149
생활체계 및 심리체계 서비스										
원체어, 의지, 보조기 사용법 및 보장구 적응훈련										-0.910
대소변, 처리, 성생활 등										-0.776
참여설례										
교육인원										0.268**
참여기간	입학-종료(계속)	-								-
	입학-종료(가끔빠짐)	-2.128								-2.313
	중반-종료	2.455								-2.551
	가끔 참여	-4.417*								-4.230*
	중단	-5.153***								-3.991*
참석정도	시작부터 끝까지	-								-
	관심 프로그램	-1.664								-1.613
	중간에 나감	-0.762								0.903
참석등기	위탁기관 직원	-								-
	근로복지공단 직원	-1.189								-1.065
	임대시설 직원	-2.755*								-0.462
	신문·포스터·전단·현수막	-4.978*								-3.888
	아는 사람	2.774								-0.672
프로그램의 기대	여가생활	-								-
	산재보험정보	-1.242								0.319
	구직활동	-2.642*								-3.243
	치료 및 상담	1.978								3.700
도움된 프로그램	심리상담	-								-
	구직활동	-1.059								1.565
	여가활동	-0.540								1.674
	컴퓨터	0.883								0.860
	산재보험	1.876								6.492*
	도움안됨	-4.085***								-1.696
개선내용	구직 및 창업	-								-
	심리체계프로그램	0.666								-0.162
	건강유지프로그램	-2.042								-0.879
	산재보상 상담 프로그램	-3.026								-4.601
	적당	0.987								-0.505
	폐지	-0.224								4.020
프로그램 통합	일반장애인과 통합	-								-
	시설공용·프로그램분리	-0.020								0.253
	일반장애인과 분리	-2.413								-0.303
	관계없다	0.750								-1.324
인지행동변화										
변화된 인지행동	자기효능	-								-
	여가생활	4.333								1.115
	취업·창업	-2.957								-2.629
	건강회복	4.293								1.817
	도움없음	-7.051								-4.602*
R ² (P)	0.117 (0.000)	0.124 (0.000)	0.078 (0.000)	0.033 (0.000)	0.265 (0.000)	0.223 (0.000)	0.632 (0.000)	0.462 (0.000)	0.771 (0.000)	